

1. 개정이유

「항만안전특별법」 개정으로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기, 방법,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규정(안 제1조의2제1항)

실태조사를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고,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매년,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

나. 실태조사 방법 규정(안 제1조의2제2항)

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실태조사 절차 규정(안 제1조의2제3항)

실태조사 조사의 범위·일시·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 3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항만재해 실태조사 :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,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하는 조사
2. 항만안전 실태조사 :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범위·일시·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</u> <u>1. 항만재해 실태조사 :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,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하는 조사</u> <u>2. 항만안전 실태조사 :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범위·일시·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</u>